디자인보호법 김진주

펄디자인보호법[제1판]

3차 추록자료 및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추록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강사 김진주입니다. 2024. 1. 2 펄디자인보호법 제1판에 대한 추록자료를 게재합니다.

이번 3차 추록을 통해서 혼동될 수 있는 교재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특히 2023. 12. 21 에 심 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추록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교재오류로 인해 혼동을 겪으신 수험생분 들께 번거로움을 만들어드려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도면제출방법의 변경"과 함께 "심사절차 구체화/보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8일 윌비스 변리사학원에서 최종정리강의를 진행하며(무료오픈), 해당 강의에서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대해 함께 강의를 진행합니다. 시험이 점점 다가오면서 강의수강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최종정리 강의를 꼭 수강하시여 해당 내용들을 빠짐없이 학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변리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진주 드림

3차 추록 (2023. 11. 16.)

155p | 글자체디자인의 요지변경

심사기준) 글자체 디자인의 요지변경 사례 - 요지변경이 아닌 경우(추가)

소문자가 따로 없어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출원한 영문자 글자체의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 대문자의 크 기만을 변화하여 소문자를 보정한 경우

> ABCDEFG HIJKLMN DPQRSTU VWXYZ

> ABCDEFGHIJ KLMNDPQR STUVWXYZ

203p | 관련디자인의 취지

• 관련디자인은 출원인의 권리보호 방안 중 하나이다. 디자인권은 모방이 쉬운 특성상 그 권리범위를 유사범위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의 동일 · 유사판단은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하므로, 권리자로서는 침해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기본디자인으로부터 변형시킨 다른 디자인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 제도를 통해 침해를 미연에 방지 ·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수정)과 유사한 디자인까지 권리범위를 확정시킬 수 있다.

심사기준 개정(2023. 12. 21)에 따른 추록

1-3 시각성 |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 추가

다만,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예: 성형수술용 리프팅실, 성형수술용 수술실(추가) 등)에는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1 디자인등록출원 | 심사관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종래) 심사관은 출원서에 창작자로 기재된 자가 진정한 <u>창작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 심이 있는 경우</u>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으며, 법 제213조에 따른 기타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 사례 예시]

☞ 만6세 미만 단독 창작자, 창작자 연령에 비하여 그 디자인 창작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법인이 창작자로 기재된 경우, 기타 언론보도/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진정한 창작자임 이 의심되는 때 등

(추가) 출원서에 출원인으로 기재된 자가 <u>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u>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법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2-2 디자인등록출원 | 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 간소화

〈디자인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 변경(예)〉

변경전	변경후
[도면 1.1]	[도면 1]
[도면 1.2]	[도면 2]
[도면 1.3]	[도면 3]

2-2 디자인등록출원 | 참고도면의 지위

개정 전 (2023. 1.)	개정 후 (2023. 12. 23.)
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지 않는다	참고도면은 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서 원칙적 으로 권리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3 1디자인1디자인등록출원 | 도면제출 방법 및 사례 추가

(개정 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 이 경우 결합된 완성품의 도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후)

심사기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자명한 경우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자명한 경우 구성물의 도면만으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예시와 같이 결합된 완성품 상태를 도시하여야 한다.



☞ 다음의 '찻잔과 받침접시'사례와 같이 물품의 용도, 형태적,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 구성물의 도면 없이 결합된 완성품 상태의 도면만으로도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
찻잔과 받침접시에 대한 각각의 도면(예: 찻잔은 도면A, 받침접시는 도면B)은 생략할 수 있다.



(사례추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형상·모양을 이루는 경우 1디자인 1물품으로 인정한다.



(사례추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표현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일체화된 상태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1디자인 1물품으로 인정한다



2-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물품명 기재

개정 전 (2023. 1.)	개정 후 (2023. 12. 23.)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없으며 그 명칭이 물품의 용도를 최소의 단위로 표현한 것이라면 "○○○용 부재"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건축용 부재(×), 창틀용 부재(○)	실제 거래계에서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아 직 존재하지 않으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 품의 용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여 표현한 것 이라면 "○○○용 부재" 등의 명칭도 가능하 다. 다만,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없이 포 괄적으로 표현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다.

2-5 디자인의 유사판단 | 유사의 범위

디자인의 유사범위의 폭을 설정하는 방법은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을 넓게 보고,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을 좁게 본다.

- 1.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 : 약간 유사해도 유사로 판단
 - (가) 새로운 물품
 - (나) 같은 종류의 물품이라도 특별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 예) 날개 없는 선풍기와 같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적 특징을 가진 경우 넓은 유사범위를 가진다(추가).
 - (다)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2-5 디자인의 유사판단 |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판단방법

- 2.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
 - 예1) 텔레비전, 에어컨 등은 전체 중 앞면 부분에 비중을 둔다.
 - 예2) 세면대의 경우 평면도 또는 사시도(담수부의 형태가 잘 표현된 도면)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추가)
 - 예3) 세탁기 등은 전체 중 아랫면 부분에 비중을 적게 둔다.
 - 예34 물품의 구매 시 일반수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유사여부 판단 시 비중을 높게 둔다.

3-1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상 이용가능성 물품류

심사관 참고)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물품명칭

현행 디자인물품류별 물품목록('24.1.1 기준)에 의하면 '장식용 곤충표본집', '액자용 그림', '그림엽서', '소형장식품', '장식용 공예품', '도자기', '광고용 조형물', '옥외용 조형물', '교량용 조형물' 등의 명칭은 인정되고 있다.

심사기준) 물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디자인

예) [불인정] 상품의 진열, 배열, 배치방법 또는 이에 관한 아이디어 등

3-1 공업상 이용가능성 | 디자인 표현의 구체성이 없는 경우

-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목적・ 사용방법・사용상태・재질 또는 크기 등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2 재질 또는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신발, 이어폰, 귀걸이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좌우 대칭 형태로 디자인, 제조, 이용되는 것이 자명 한 물품의 디자인이 아님에도 디자인의 설명을 생략한 경우
 - ම 일종 블루투스 이어폰 등과 같은 경우, 도면에 좌, 우 중 한 쪽 이어폰의 형태만 도시되어 있고, 다른 쪽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도 구체성이 결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 ④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 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반복생산 가능성이나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⑤ 「디자인의 설명」 란에 디자인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물품의 혼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예) 정불인장 "자동차"로 출원하면서 「디자인의 설명」 란에 "본원 디자인은 자동차 모형으로 제작 가능함"으로 기재한 경우
 - (예) 전투면장 "라벨"로 출원하면서 「디자인의 설명」 란에 "본원 디자인은 화상디자인으로 사용가능함"으로 기 재한 경우
 - @ 연장 다음과 같은 형태의 "휴대폰 케이스"의 경우 "지갑"과의 혼용 가능성이 인정된다.



- ⑤ 물품의 부분으로서 표현되는 화면디자인 출원 시 화면이 도시되는 부분의 도면만(예) 정면에서 바라본 상태를 표현한 도면)을 제출하되,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단,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정보통신기기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과 같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도면만으로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구체성이 결여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❸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형태를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마네킹 등의 보조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⑤ 도면에서 생략된 부분으로 인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디자인의 설명」란에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부 도면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해당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참고)이 경우 평면적인 물품을 표현하여 뒷면부분의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부분은 모양 없음"이라 기재할 수 있으며 뒷면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예 223 '의류' 디자인을 바닥면에 납작하게 펼친 상태로 표현한 경우 의류의 형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좌, 우측 등에서 바라본 도면이 생략되어도 표현의 구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일부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와 「디자인의 설명」 란 기재방법

구분	제출도면	기재방법
(1) 앞면부분과 뒷면부분이 같거 나 대칭인 경우	앞면부분 또는 뒷면부분	"뒷면부분은 앞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또는 "앞면부분은 뒷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2) 왼쪽면부분과 오른쪽면 부분 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	왼쪽면부분 또는 오른쪽면부분	"오른쪽면부분은 왼쪽면부분과 동일(대칭) 이므로 생략함" 또는 "왼쪽면부분은 오른쪽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3) 윗면부분과 아랫면부분이 같 거나 대칭인 경우	윗면부분 또는 아랫면부분	"아랫면부분은 윗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또는 "윗면부분은 아랫면부분과 동일(대칭)이므로 생략함"
(4)(1),(2),(3) 외에 도면 중 같은 부분이 여러 개인 경우	같은 부분들 중 한 개의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5) 항상 설치 또는 고정되어 있어 서 특정 부분을 볼 수 없는 경우	특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6) 두께가 얇은 입체물품 (예) 포장용 파우치 등)	주요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7) 평면적인 물품(포장지, 라벨, 직물지 등)인 경우	표면도, 이면도 ※ 이면부분에 모양이 없을 경우 이면도생략 가능	해당 이유를 설명
(8)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 자인의 경우	화면디자인이 도시되는 부분	해당 이유를 설명

- 10 도면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물품의 뒷면부분에서 바라본 도면(뒷면 사시도) 및 아랫면 부분에서 바라본 도면(아래면 사시도)을 포함한다]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어떤 부분이 추측상태로 남아 있어 디자인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도면이 서로 불일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디자인의 요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대법원 2004후2123(2005.9.15.선고) 판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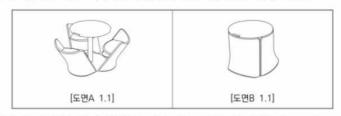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이 사시도와 6면도의 원근법 등 표현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또는 보는 이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으로서 디자인 창작의 요점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에 불과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12 도면(도면대용으로 제출하는 사진을 포함한다), 견본 등이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디자인의 표현 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볼 때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여 당업자가 그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면, 견본 등이 지나치게 작거나 또는 선명하지 않아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2) 사진인 경우 물품의 배경, 음영, 타 물품의 영상 등이 찍혀서 디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 출원서 또는 도면 중에 문자나 부호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형상, 모양 및 색채를 추상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디자인의 요지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 【4 색채도면의 일부에 착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다만,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 란에 무착색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아래(1),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1) 백색, 회색 또는 흑색이라고 색채를 적은 것
 - (2) 투명 부분이라고 적은 것
 - (3) 뚫린 부분이라고 적은 것
- 정・뒷면도, 평・저면도, 좌・우측면도, 사시도 등의 제출 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디자인 도면)의 기재요령 참고 (1) 단면도, 확대도, 절단부 단면도 또는 사용상태도 등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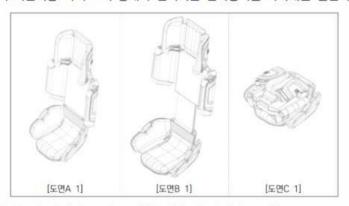
[심사관 참고] 단면도 등의 도면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되 해당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어야 하며,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도면은 참고도면으로 판단한다.

	구분	
	(절단부)단면도	16번에 따라 작성
	(부분)확대도	17번에 따라 작성
도면	분해사시도	사용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은 제외함
	전개도	전개도를 도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완성된 상태의 도면은 사용상태 도로 판단
참고도면	사용상태도	그 밖의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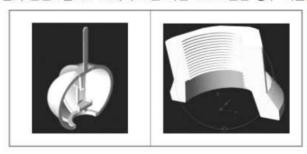
- (2) 조립완구 등과 같은 합성물의 경우에
 - (개) 구성하는 각 편의 도면만으로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보관되는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이 없는 경우
 - (L) 조립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구성 하는 각 편의 도면이 없는 경우
- (3) 열리고 닫히거나 펼쳐지고 접히는 등 형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동적(動的) 디자인)으로서 변화하기 전후의 상태를 도시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으나 변화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각각의 도면이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됨에도 「디자인의설명」라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경우
 - (M) 인정 "탁자가 부설된 의자"의 펼쳐진 상태의 도면 및 접힌 상태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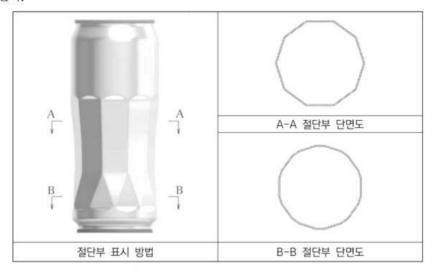
- (4)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형태가 변화하는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정지상태의 도면과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도면(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이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경우
 - (예) ②② "접이식 어린이용 카시트"의 형태가 변화하는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



- 16 단면도 등의 절단면 및 절단한 곳의 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절단면에 평행사선(해칭 : Hatching)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의 절단면의 표현이 불완전하 게 표시되었거나 표시가 없는 것
 - (예) 인정 다음과 같이 단면도를 3D 그래픽 또는 사진으로 표현된 경우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절단된 부분을 원래의 도면에서 쇄선 등으로 표시(절단쇄선, 부호 및 화살표)하지 않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다만, 일정한 도면을 지정하고 그 도면의 "중앙 종단면도", "중앙 횡단면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은 것은 예외로 한다



- ☑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확대한 부분을 쇄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 다만, 확대한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도면에 그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18 덮개와 본체로 구성된 물품과 같이 분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결합된 상태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그 결합된 상태의 도면과 구성물품 각각의 도면이 없는 경우
- 19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형상이 연속하는 디자인 또는 평면적인 물품으로서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 하는 디자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
 - (1) 도면이 그 연속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시(단위모양이 1.5회 이상 반복되어야 한다)되지 않은 경우, 다만, 단위모양이 1회 도시되었더라도 「디자인의 설명」 란에 반복(단위모양의 결합 및 배열)상태를 기재하였고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이 일치하며 반복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 "직물지" 디자인의 도면에서 모양이 상·하 및(또는) 좌·우로 연속 반복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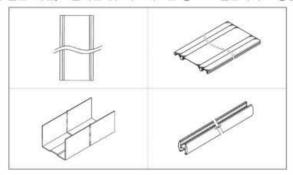
올바르지 않은 도시	올바른 도시
	〈단위모양이 1회 도시되었고「디자인의 설명」란에 반복상태를 기재하였으며 반복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예시〉
*********	(물품) 직물지 (디자인의 설명) 출원된 도면을 단위모양으로 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 반복되는 것임 * * * * * * * * * * * * * * * * * * *

(2) 「디자인의 설명」 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1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 기재방법 예시〉

구 분	기재방법 (예시)
모양이 연속 또는	"본 디자인의 모양은 상하좌우 방향으로 연속 반복되는 것임"
반복하는 평면 디자인	또는 "좌우로 연속 반복되고, 상하는 전폭임
형상이 연속하는	"본 디자인은 길이방향으로 연속되는 것임" 또는
입체디자인	"본 디자인은 좌우로 연속되는 것임

- 20 길이가 한정된 물품의 중간을 생략한 도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1) 생략한 부분을 두 줄의 평행한 1점쇄선으로 절단하여 표시하지 않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 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없는 도면
 - ⑩ 일 두 줄의 굽은 곡선, 2점쇄선 및 지그재그선 등으로 절단하여도 공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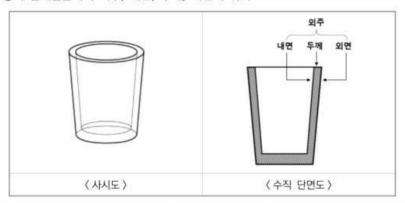


- (2)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생략한 길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면상 몇 mm 또는 몇 cm 생략되었다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선, 끈, 줄 등과 같이 물품의 구성주체가 아닌 부수적인 구성물의 길이를 도면상 생략하는 경우에는 도면상 생략한 길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 필요에 따라 절단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이를 설명 란에 기재할 수 있음
 - (예 창틀용 프레임, 건축용 프로파일 등)
- 21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외주면에 색채가 없고 모양이 없는 경우에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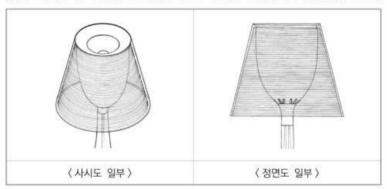


(2) 외주의 외면·내면·두꼐 속의 어느 한 곳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도면 외에, 모양 또는 색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도면(뒷면의 모양이나 색채가 투영되지 않은 앞면, 밑면의 모양이나 색채가 투영되지 않은 윗면 또는 모양부분의 전개도 등)을 첨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면의「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만으로도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이를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예 - 1 투명의 입체물품에서 외주, 내면, 두께, 외면의 위치



(예)-2 인종 다음과 같이 투명재질의 전등갓의 내측면에만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전기스탠드' 디자인의 경우 재질에 대한 설명과 도면만으로도 디자인이 충분히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주의 외면·내면·두께 속이나 외주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둘 이상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도면 외에,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각 면별(외주의 외면, 내면 또는 그 두께 속, 외주에 둘러싸인 내부)로 도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만, 도면만으로도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m) 외주의 외면과 내면에 모양이 있는 컵 등

- (4) 투명입체로써 그 일면에만 모양 또는 색채가 있는 경우에 그 면에만 모양 또는 색채를 표현 (다른 면에서 투영되어 보이더라도 표현하지 아니한다)하지 않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만, 도면만으로도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5) 투명한 부분의 두께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투명 부분의 두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단면도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절단된 부분은 해칭(연속된 빗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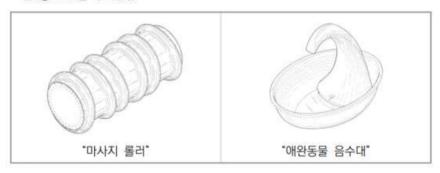
- 22 부분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 (7)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 의 부분을 파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았거나 이와 상응하는 표현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23 채색(coloring) 또는 경계선(boundary) 등을 통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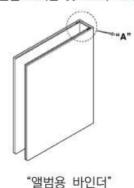
- ※ "운동화"디자인의 경우 1점쇄선으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간의 경계를 표시했고, "트랙터" 디자인과 "테이프 디스펜서" 디자인의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착색하였다.
- (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도면 등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다)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그 경계를 1점쇄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도시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2)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전체형태가 도면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단, 부분디자인의 도면 중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지 않으려는 부분의 일부만이 도시되어 있으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예) 인공 다음과 같이 손목시계 부분디자인의 경우 시계 '밴드'부분의 도시가 완전하지 않지만 통상의 지식수 준의 디자이너 관점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시계 '무브먼트' 부분이 손목시계 전체에 서 차지하는 위치, 크기, 범위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구체성이 결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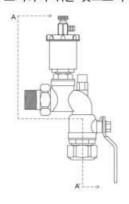
- 2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1조의 도면을 도시하지 않은 경우
 - (2) 구성물품들이 조합되어 통일된 형상, 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의 1조의 도면을 도시하지 않는 경우
- 24 3D 모델링 파일을 도면 대신 제출한 경우
 - (1) 3D 모델링 도면이 셰이딩(shading) 상태가 아닌 와이어프레임(wire frame) 상태로만 표현 되거나 3차원의 돌려보기가 불가능한 2차원 상태로 도면이 표현된 경우
 - (2) 3D 모델링 도면으로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도시되지 않아 형태를 파악하기 곤란 한 경우
 - (3) 3D 모델링 도면을 실행하였을 경우 도면이 깨지거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성된 면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물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 조면 내의 도형 안에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내용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부호 또는 문자가 있는 경우, 다만, 도면(3D 모델링 도면을 포함하며 제출된 모든 도면을 말한다)에 평면, 굴곡, 오목 및 볼록 등을 음영으로 표현하기 위한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濃淡)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양과 혼동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라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 -1 (인종) 다음은 도면 내에 곡면의 입체감을 표현하기위해 음영선을 사용한 경우로서 모양과 혼동되지 않는 정도로 볼 수 있다.



(M)-2 (28) 도면 내 도형 안에 확대부분을 표시한 것으로서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



(예)-3 (213) 도면 내에 (복합)단면부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지파악이 가능한 경우



"상수관 연결밸브"

[심사관 참고]

- ▶ 다음의 경우에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음영선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선보다 가는 세선(細線)을 겹쳐 사용한 경우
 (2) 형상 또는 모양선과 연결되지 않은 가는 선을 사용한 경우
- ▶ 파선을 부분디자인이 아닌 모양선을 나타내기 위해 도시할 때, 그 취지가 불분명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M) 챙부분의 파선은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며, 본체부의 파선은 재봉선을 나타냄



3-2 신규성 | 캐릭터 그림의 공지

동물을 의인화한 캐릭터 그림을 디자인출원 전 공지했는데, 디자인출원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개정 전 (2023.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은 디자인이 법 제 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능하며, 물품성을 결여하여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품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인터넷에 공지한 후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등으로 하여 캐릭터만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예외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화상디자인으로 공지한 후 이를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에도 신규성 상실의예외 주장대상이 될 수 있음

개정 후 (2023, 12, 23.)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은 출원인이 자기의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 시 출원 전 공지된 사실을 예외로 간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지된 대상이 법 제3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함. 다만, 캐릭터 그림이 단지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패널등을 통해 표현되었거나 화상디자인으로 공지된 것이라면 화상디자인출원시 신규성 상실의예외주장 가능함.

3-3 창작비용이성 | 공지디자인 A에 의해 신규성 & 창작비용이성 위반

심사관 참고) 출원디자인이 공지디자인 A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도 있고 공지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A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있고 공지디자인 A와 유사하기도 한 경우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관련규정 적용방법

☞ 이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괄호 속 내용(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1항 <u>각 호(신규성)만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제1항의 신규성에 관한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제2항에 따른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병합하여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번에 통지할 수 있다.</u>

3-3 창작비용이성 | 상업적 - 기능적 변형

개정 전 (2023, 1.)

개정 후 (2023. 12. 23.)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화를 말한다.

"상업적·기능적 변형"이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이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조단가 등과 같은 경제적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단순한 설계변경'을 의미한다.

3-3 창작비용이성 | 주지의 형상 등 - 자연물

심사관 참고)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조형물, 유명한 경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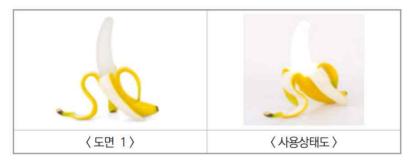
(인정) 다음과 같이 흔한 조형물(예: 돌하르방)이나 경치일지라도 보는 각도에 의하여 특징을 지니도록 표현하거나 원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인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변형을 가했다면 「주지의 형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창작비용이성 | 디자인의 취사선택을 통합 결합

심사기준) 창작비용이성 판단방법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조형물, 유명한 경치 등 공지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u>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한 것 등과 같은 **단순모방**이 아 니라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서</u>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 는 경우에는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 정] 다음과 같은 '탁상용 조명' 디자인은 주지의 바나나 형상을 탁상용 조명으로 전용한 것인데 이를 전용함에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인 정] 다음과 같은 '악세사리용 진열대' 디자인의 경우 원, 원뿔, 원뿔대 등 주지의 형상을 결합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결합을 해당물품에 전용함에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3 창작비용이성 | 인용가능한 공지디자인의 범위

심사기준 사례) 창작비용이성 판단 시 인용이 가능한 공지디자인의 범위

[불인정] 창작비용이성 여부 판단 시 출원디자인과 이와 대비되는 디자인이 반드시 동일·유사한 물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대비되는 디자인에 의하여 출원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면 그 출원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디자인은 '화이트보드'에 관한 디자인이고 대비되는 디자인은 책자를 수납하는 '책장'에 관한 디자인이라면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다르나, 두 물품 모두 다 같이 실내에서 설치되고 사용자도 유사하며 모두 가구 업자나 실내장식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될 것이므로 출원디자인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책장의 디자인을 화이트보드 디자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



3-4 선출원주의 | 디자인 표현방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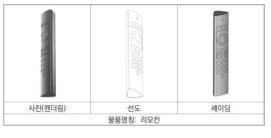
개정 전 (202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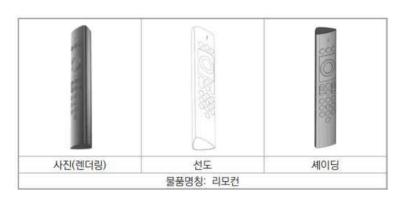
사진과 선도의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는 2개이상의 출원의 동일·유사 판단에서, 사진도면이 카메라 각도에 따른 음영만 나타낼 뿐 선도면과 표현이 동일한 경우 양 디자인은 동일로 판단하며(예1), 무채색을 색구분으로써나타낸 경우는 상호간 유사로 판단한다 (예2).



개정 후 (2023. 12. 23.)

하나의 디자인을 각각 사진(컴퓨터 렌더링 포함), 선도(線圖), 셰이딩(shading, 무채색 음영구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경우, 디자인의 동일·유사판단에서 상호간 유사로 판단한다(다음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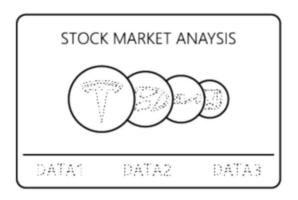
3-6 부등록사유 | 부등록사유 1호 심사기준

다음 사례와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국기(외국의 국기를 포함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당한(추가) 변화를 가해 국가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기에 아무런 변화를 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수 있다

3-6 부등록사유 | 부등록사유 3호 예시 추가 및 심사기준 구체화

개정 전 (2023. 1.)	개정 후 (2023. 12. 23.)
주지·저명하지 않은 타인의 상표·단체표장	주지·저명하지 않은 타인의 상표·단체표장
·증명표장이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증명표장이 <mark>디자인에 표현되어 있으나</mark> 타인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의 우려가 없다
않는다.	면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인 정] 다음과 같은 화상디자인출원의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법 제34조제3호에 해당하는 형태(예: 타사의 표장)가 표현되어 있으나 주식거리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정보표시용 화상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예시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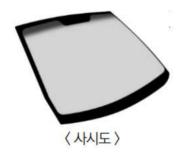


〈정보표시용 화상〉

3-6 부등록사유 | 부등록사유 4호 심사기준

심사기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1.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법 제34조(등록을 받을 없는 디자인) 제4호를 적용한다.
- 2.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대체할 수 있는 형상이 존재한다면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2) 기능적 형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새로운 심미감이 도출된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예) 불인정 '자동차용 윈드 쉴드 글래서'디자인의 경우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이 무효됨



- 3. 물품의 호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표준규격 등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으로 판단한다. 단,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예) 규격봉투, USB 규격포트 등
 - ※ 「표준화된 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규격 등 법률과 공적인 표준화 기관에 의해 확정된 "공적인 표준 규격"과 공적인 규격은 아니나 그 규격이 당해 물품분야에 있어서 업계 표준으로서 인지되고 있고, 당해 표준규격에 기초한 제품이 그 물품의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규격으로서의 명칭, 번호 등에 따라 표준이 되어 있는 형상, 척도 등의 상세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표준 규격"을 말한다.
 - ※ 표준규격 등과 관련된 형상, 모양 등은 기능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형상인지여부는 물론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여부도 판단되어야 한다.

4-1 부분디자인 | 디자인등록의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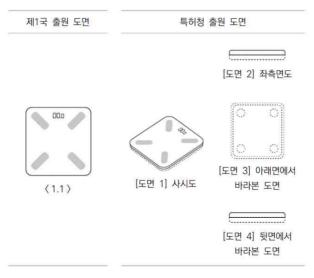
[인정] 형태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1점 쇄선 등으로 경계선을 도시하지 않아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이 '화분'의 가장자리 부분이고 '화분'의 수용부는 제외되는 것이 자명하므로 등록받고자하는 부분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4-1 부분디자인 | 조약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한 국가의 제도적 특성(EU·미국 등은 전체 또는 부분디자인을 표시하지 않고 출원되며 도면요건도 우리나라와 상이함)상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되어 있는 <u>디자인이 도면의 **일부(사시**도, 정면도 등)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u> 최초 출원과 국내출원서에 나타난 도면 그 자체를 기초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 1) (인정) EU에 출원된 디자인이 정면도 또는 사시도 한 개만으로 표현되어 있고 국내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되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물품명은 "체중계"이며, 「디자인의 설명」 란에 "점선 부분은 등록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부분임"으로 기재한 경우)



4-2 완성품과 부품 |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 사례 구체화



4-2 완성품과 부품 | 창작비용이성

기존 (2023. 1.)	개정 (2023. 12. 23.)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 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하지 아니한다.	선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 디자인이 후 출원되면 거절되지 않는다. 그러나 <u>공지된 부품들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졌고 이러한 결합이 해당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에게 용이한 창작이라면 법 제33조 제2항 창작비용이성으로 거절될 수 있다.</u>

4-3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 선출원주의

- 동적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동적디자인과만 선출원을 적용한다.
- 그러나 동적디자인과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 간의 경우에는 <u>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u> 및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 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4 글자체디자인 | 물품에 표현된 문자 · 표지

심사기준) 물품에 표현된 문자 · 표지의 취급

- (1)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모양으로 보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 ② 상당한 정도로 도형화되어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
 -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물품을 장식하는 기능을 함께 하는 것
- (2) 물품에 표현된 문자·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모양으로 보지 않아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물품에 표현되어 있어도 삭 제를 요하지 않는다.
 - ⑦ 신문·서적의 문장부분
 - (j) 성분표시, 사용설명, 인증표지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표지



4-6 화상디자인 | 디자인의 설명란 기재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기존 '디자인의 설명'란과 통합해 일원화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화상디자인이 <u>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u> <u>관한 설명</u>을 명확하게 기재

- (예문1)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예문2) 이 화상디자인은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시간, 날짜, 날씨, 온도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부분디자인 여부, 비밀디자인 여부, 출원공개 여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취지 등

5-1 관련디자인 | 복수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디자인

선출원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정하는 경우

선출원 복수디자인	후출원 복수디자인
001. 기본디자인A	001. 관련디자인A'
002. 기본디자인B	002. 관련디자인B'

복수디자인출원 중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정하는 경우

	복수디자인
001.	기본디자인A
002.	관련디자인A'
003.	관련디자인A"
004.	기본디자인B
005.	관련디자인B'
006.	디자인C

5-1 관련디자인 | 관련디자인의 적용요건

심사기준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기본디자인이 등록결정 전이거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은 등록결정할 수 없다. 또한 등록결정한 기본디자인이 수수료 미납 등으로 취하되고 관련디자인만 설정등록 될 경우 관련디자 인은 단독디자인으로 변경되어 등록된다.

5-2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심사기준 구체화

[심사기준]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은 <u>심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심판, 소송절차 중에 가능</u>하다. 다만 심사 절차에서는 출원 시뿐만 아니라 출원 중, 등록결정이전, 의견서 제출 시, 일부심사디자인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시에도 가능하다

(1) 출원 시에 주장하는 경우

- 출원할 때에는 「신규성 주장」항목을 만들어 그 취지를 출원서에 적어 주장해야 한다.
- 증명서류는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제출가능하며 미제출 시에는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신 규성상실예외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
- 증명서류에는 공지형태, 공지일자, 공지주체 및 디자인도면 등 객관적인 증거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
-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와 해당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공지 이후 그 권리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서류에 명시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정서(의견서 포함)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경우

- 출원 중에는 보정서를 통하여 그 취지를 주장하거나 그 공지디자인을 거절이유로 한 의견제출통 지서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의견서 등을 통해서도 그 취지를 주장할 수 있다.
- 증명서류는 등록여부결정시까지 제출가능하다. 증명서류가 미제출되면 별도의 불인정 예고통지 없이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

(3) 기타 절차에서 주장하는 경우

- 그 공지디자인을 신청이유로 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등을 통하여 그 취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
- 다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증명서류가 제출된 경우 규칙 제 23조(서류의 원용)¹⁾에 따라 해당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 란에 원용의 취지를 기재하여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23조(서류의 원용)]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 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5-4 한 벌의 물품 디자인 | 구체적인 인정 예시 추가

※예) 인정 "한 벌의 주방용 국자 및 뒤집게 세트"에서 각 구성물품의 표현방법이 동일·유사한 것



※예) 인정 "한 벌의 샐러드 그릇 및 식기세트"에서 샐러드 그릇, 스푼, 포크가 서로 결합하여 그릇에 내려앉은 한 쌍의 새를 형상화한 디자인 등



5-4 한 벌의 물품 디자인 | 도면제출방법

- (1)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의 물품 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을 제 출한다.
- (2)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 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 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 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의 물품 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만** 제 출할 수 있다.
- (2)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특정 하게 결합 또는 배치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 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 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정된 심사기준(2023. 12. 21.)에서 두 가지 도면제출방법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

5-7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정당한 사유 심사기준 구체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참고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1조 제5항, 제51조의 3 제1항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우선권주장 및 증거서류 제출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권주장 후 3개월 이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미제출일 수 있으므로 만료일로부터 2개월 경과시점까지 기다린 후 심사를 진행한다.

- 1. <u>정당한 사유</u>란 <u>절차를 밟는 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u> 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의미
- 2. <u>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u> 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사건의 발생 및 소멸 일자, ② 사건과 관계된 자, ③ 사건의 내용, ④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취한 조치를 관련 담당자와 조치내용, 조치시기에 비추어 상세하게 소명 필요
- 3.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것으로서 관련자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전산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시스템 제작·판매사 등에서 작성한 시스템 동작오류 증명서면이 대표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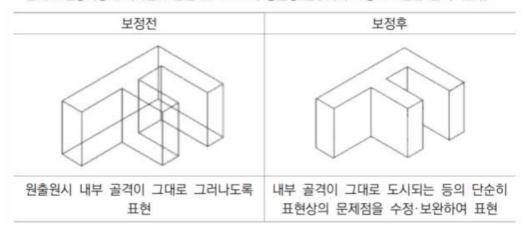
- 4.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로 업무관련 이메일, 업무메뉴얼, 계약서 사본, 관계자 진술서 등도 제출 가능
- 5. 절차와 관계된 자가 복수인 경우, 복수 당사자 각각에 대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 모두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만 인정 가능
- 6. ① 변리사 등 임의대리인 단독의 실수, 태만, ② 출원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 부지의 주장, 실수, ③ 법령지식이 없거나 무자격자를 위임한 결과, ④ 기간 미준수의 직접적 원인을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경우, ⑤ 급작스런 중한 질병의 진단, 입원, 수술 등이 아닌 일상적인 질병, 중하지 않은 질병치료, ⑥ 출원인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는 없으나 일반적인 관리의무 소홀이나 사전 조치가 미흡한 경우, ⑦ 출원인과 대리인간의 소통결여 등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자연재해로 인한 연락 두절
사건 및 조치	 출원인 A는 외국인으로서 현지 대리인 B와 한국 대리인 C를 선임하여 출원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B에게 한국 출원을 지시했고, 이에 B는 한국 대리인 C에게 연락을취하고 전화통화 후 관련 자료를 송부 그러나 미국 현지의 기상악화에 의한 정전 등으로 관련 자료가 적시에 한국대리인 C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한국대리인 C는 B의 자료 송부 사실을 마감일에서 7일이경과된 후 기상정상화 이후에 B의 확인 메일을 통해 인지 C는 즉시 당일에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했고, 현지 언론의 기상관련 기사, B측의 피해상황사진, 현지 정전 기록 보고서, C에게 송신한 메일 등을 첨부함
판 단	 기간 경과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서 A는 B에게 사건을 위임한 이상 사건 발생이전에 취한 조치는 타당 B는 천재지변 전후 C와 교신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사건 후 확인 메일을 송부하는 등 타당한 조치 이행 C는 사건 인지 후 즉각적으로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인정

6-2 보정 | 도면의 보정 - 요지변경이 아닌 경우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변경하는 경우 (삭제)

- 선도면으로 제출한 디자인을 사진 또는 견본으로 보정하거나, 반대로 사진 또는 견본으로 제출한 디자인을 도면으로 보정한 경우에 도면 또는 사진 등을 그대로 실시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정하는 경우
- 2 3D 모델링 파일로 제출된 것에 문제가 발생하여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정된 3D 모델링파일로 제출하거나 3D 모델링 파일을 선도면, 사진,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등으로 보 정하는 경우
 - (예) ②② 다음과 같이 보정과정에서 투명 여부 등 재질에 관한 설명, 구성요소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이 없다면 단지 표현방식상의 하자를 보완한 것으로 보아 동일성 범주내의 보정으로 판단 할 수 있다.



- 3 도면 등이 너무 작거나 불선명한 경우에 최초에 출원한 것과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한 크기 또는 선명한 것으로 보정하는 경우
- 4 선명한 사진이더라도 배경 등 불필요한 것이 촬영되어 있어서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배경, 음영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정하는 경우
- ⑤ 도형 안에 음영, 지시선, 그 밖에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선・부호 또는 문자 등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정하는 경우
- 6 디자인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오기를 정정하거나 미세한 부분의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7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하여 출원디자인의 일부를 삭제 보정하는 경우,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제외한다.
 -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감축, limitation)은 지정국 관청 절 차진행 이전에 국제사무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복수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일부 디자인에서만 전체적인 형상을 구체적으로 도시하고, 그 외의 디자인에서는 충분히 도시되지 않았을 때, 도면을 추가하는 보정이최초 출원서에 포함된 도면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보정인 경우
 - ※ 이 경우 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최초출원					
M001		0	Ī,		0	
	1.1	1.2	1.3	1.4	1.5	1.6
M002						
						2.6
		Û	Û	Û		
				보정		
M002			ī		0	
	2.1	2.2	2.3	2.4	2.5	2.6

- 9 사진 도면을 선도 도면으로 또는 선도 도면을 사진 도면으로 보정 시보는 촬영 각도에 따른 음영 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 10 컴퓨터 그래픽 렌더링 도면,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도면, 3D 모델링파일 도면, 선도 도면 들 간의 보정시에도 보는 각도에 따른 음영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 11 디자인에 포함된 문자 중 장식기능이 없고 오로지 정보 전달만을 위한 문자(보통의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문자 포함)를 삭제하거나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문자, 중심선, 지시선, 부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

6-3 직권보정과 직권재심사 | 직권재심사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 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직권보정의 의의

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에 명백한 오기아 있을 때 별도의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명백한 오기에 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심사지 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직권보정의 시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할 때에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직권보정의 대상

- 직권보정이 가능한 "명백히 잘못된 경우" 란 디자인의 설명, 도면의 기재 등을 참작하여 출원인의 당초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단순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심사관 직권으로 보정하더라도 해당 디자인 등록 시 권리범위 해석이나 디자인의 실시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도 출원인의 의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면 직권보정하지 않는다.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직권보정은 법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직권보정이 가능한 경우]

구분	직권보정 전	직권보정 후	비고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OOO임, 2. 본원 디자인은 OOO임, 4. 도면 1은 OOO임, 5. 참고도면 1은 OOO임	 재질은 OOO임, 본원 디자인은 OOO임, 도면 1은 OOO임, 참고도면 1은 OOO임 	항목 번호의 명백한 오기
물품 의 명칭	"가빙"	"가방"	물품의 명칭이 "가빙"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도 가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심사기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명백히 잘못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의견제출통지를 통한 보정 또는 출원인의 자진 보정을 통해 오류를 보정하여야 한다.

- 1. 도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예) 기본도면 \rightarrow 참고도면, 참고도면 \rightarrow 기본도면
- 2. 도면의 명칭이 동일하더라도 도면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예) 참고도면 1 → 참고도면 2
- 3. 물품의 국제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4.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예) 디자인의 설명에서 도면 1은 정면도라 하고 도면 1에 배면도를 첨부한 경우
- 5.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기재사항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분류와 디자인의 설명 란 또는 디자인창작의 요점에 기재된 물품의 명칭, 분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직권보정의 절차

-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내용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출원인이 직권보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보정 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한다.
- 직권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이 아닌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직권재심사의 의의

설정등록 이전에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디자인등록의 무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직권재심사의 시기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설정등록되거나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3) 직권재심사의 대상

직권재심사는 무효가능성의 차단을 위한 것이므로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 조까지에 해당하는 거절이유는 직권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거절 이유만을 대상으로 한다.

- 1) 명백한 거절이유란 등록결정된 디자인이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거절이유로 인해 등록결정된 디자인이 무효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 2) 출원인이 직권재심사에 의한 등록취소결정을 통지받기 전에 디자인이 설정등록되거나, 취하· 포기되면 등록취소결정은 무효이며 직권재심사 역시 할 수 없다.

(4) 직권재심사의 절차

- 직권재심사를 통해 등록을 취소하고자할 경우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 협의에 의해 등록취소 여 부를 결정한다.
- 직권재심사를 통한 등록취소가 결정되면, 등록취소 통지서를 작성 및 발송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일반 심사절차와 동일하다.
- 등록결정 이전에 통지했던 거절이유로 직권재심사를 통해 재차 거절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한다.

6-4 우선심사 | 시행령 개정

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 인등록출원(수정)
-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 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 록출원
-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 인등록출원
- 7.「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 워
-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 인등록출원
-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수정)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 11. 삭제 〈2023. 12. 19.〉
- 1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 13. 삭제 〈2023. 12. 19.〉
-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